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4-29

서 울 행 정 법 원

제 7 부

판 결

사 건	2014구합72798 배분계산처분무효확인 등
원 고	1. A
	2. B
피 고	1. [redacted]관리공사
	2. [redacted]시
	3. [redacted]시
변 론 종 결	2015. 4. 30.
판 결 선 고	2015. 5. 14.

주 문

1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,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매사건에서 2014. 9. 25. 한 배분계산처분 중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하여 423,389,320원을 초과하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4-29

한 배분계산처분 및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하여 한 360,715,675원의 배분계산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. 피고 [redacted]시는 원고 B에게 32,576,766원, 원고 A에게 21,717,844원을 각 지급하고, 피고 [redacted]시는 원고 B에게 216,429,405원, 원고 A에게 144,286,270원을 각 지급하라.

예비적으로, 피고 [redacted]관리공사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매사건에서 2014. 9. 25. 한 배분계산처분 중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하여 423,389,320원을 초과하여 한 배분계산처분 및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하여 한 360,715,675원의 배분계산처분을 각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 소유자인 D로부터 1994. 9. 13.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,450,000,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, 1996. 2. 14.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,420,000,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다.

나. 피고 [redacted]시(처분청 [redacted]구청장)는 1987. 8. 8. D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.

다. 피고 [redacted]시(처분청 경주시장, 이하 피고 [redacted]시와 [redacted]시장을 모두 '피고 [redacted]시'라고 한다)는 E 주식회사(이하 'E'이라고 한다)가 체납한 아래 각 조세와 관련하여 D가 E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D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1999. 11. 15.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4-29

(단위 : 원)

년도	과세번호	법정기일	세 목	세 액	가산세	가산금	합 계
1994	F	1994. 06. 01.	종합토지세	197,878,270	0	112,566,060	310,444,330
1995	G	1995. 06. 10.	구)재산세(건축물)	63,890	0	3,180	67,070
1995	H	1995. 10. 10.	종합토지세	143,140,080	0	110,217,180	253,357,260
1995	I	1995. 11. 10.	구)취득세(부동산)	6,118,840	0	4,711,130	10,829,970

라. C이 2009. 2. 27.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.

마. 피고 [redacted]시는 2012년경 피고 [redacted]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다. 피고 [redacted]시는 위 공매절차에서 위 각 조세채권으로 교부청구를 하였고, 피고 [redacted]관리공사는 2014. 9. 25.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별지 배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배분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, 5, 6호증, 을가 제1호증(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들 주장

위 각 조세채권 법정기일 당시 D는 E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피고 [redacted]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. 따라서 위 압류에 기초한 피고 [redacted]관리공사의 피고 [redacted]시(배분계산표에는 [redacted]시청'으로 표시되어 있다)에 대한 360,715,675원의 배분처분은 무효이고, 피고 경주시의 D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 [redacted]시의 배분금 54,296,610원을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피고 [redacted]시에 흡수시켜 배분한 것 역시 무효이므로, 그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, 원고들의 상속지분(원고 B 3/5, 원고 A 2/5)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원고 B에게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4-29

32,576,766원, 원고 A에게 21,717,844원, 피고 경주시에 대하여 원고 B에게 216,429,405원, 원고 A에게 144,286,270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(주위적 청구).

피고 [redacted]시의 위 압류가 무효인 이상 피고 [redacted]관리공사가 피고 [redacted]시, [redacted]시에 대하여 한 위 각 배분처분은, 설령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,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(예비적 청구).

나. 판단

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·입증할 책임이 있다(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).

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,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, 의미,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한다(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).

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,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(대법원 2012. 2. 23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4-29

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).

갑 제1, 4, 8호증, 을가 제1호증, 을나 제2호증(가지번호 포함)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, ① E 소유 부동산에 관한 [redacted]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[redacted]세무서장이 국세 및 가산금 교부청구를 하여 1994. 9. 29. 7,886,724,880원을 교부받았는데, 위와 같은 교부는 [redacted]세무서장 및 그 전신인 [redacted]세무서장이 K 및 D에게 부과·고지하였던 1981년도분부터 1993년도분까지의 종합소득세, 방위세 및 그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E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사실, ② K, D는 대법원 82도2873 사건에서 자신들이 E의 실질적인 1인 주주라고 주장하기까지 한 사실(위 82도2873 사건에서 대법원은 K·D의 당해 범행 당시 E이 K·D의 실질적인 "1인 주주회사"였다고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나, 이로써 대법원이 K·D가 E의 "과점주주"도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), ③ K, D가 자신들을 E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여러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, 갑 제8호증만으로는 피고 경주시가 D에 대하여 한 위 각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피고 [redacted]시의 위 각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, 설령 위 각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후행처분인 압류에 승계되지 아니하고, 달리 피고 [redacted]시의 위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다. 위 압류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4-29

재판장 판사 조한창

판사 이도행

판사 김정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4-29

목 록

1. [redacted]시 L 임야 4,865㎡
2. [redacted]시 M 임야 343㎡
3. [redacted]시 N 임야 53㎡. 끝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4-29

배분계산표

※ 매각물건 소재지 : 경기도 구리시

배분금액 : 979,689,820

순위	권리내용	권리자명	접수일자	법정기일 시작 (설정일자)	법정기일 종료	지번	채권최고액	본세(원금)	가산금(이자)	합계	최종 배분금액	비고
1	체납처분비							25,234,060		25,234,060	25,234,060	
								1,971,120		1,971,120	1,971,120	
								304,580		304,580	304,580	
								27,509,760		27,509,760	27,509,760	
2	압류	[redacted]	1987.08.11	1987.08.10	1993.03.10			170,965,783	42,741,570	213,707,153	213,707,153	
								13,423,704	3,355,920	16,779,624	16,779,624	
								2,050,843	512,710	2,563,553	2,563,553	
								186,440,330	46,610,080	233,050,330	233,050,330	
3	근저당권			1993.11.29			100,000,000	10,916,101		10,916,101	10,916,101	
								857,098		857,098	857,098	
								130,946		130,946	130,946	
								11,904,145		11,904,145	11,904,145	
4	압류	[redacted]세청	1999.11.16	1994.06.01	1994.06.01			181,454,374	103,223,077	284,677,451	284,677,451	
								14,247,238	8,104,756	22,351,991	22,351,991	
								2,176,661	1,238,227	3,414,888	3,414,888	
								197,878,270	112,566,060	310,444,330	310,444,330	
5	근저당권			1995.02.13			2,500,000,000	94,407,073		94,407,073	94,407,073	
				1995.02.13				7,324,687		7,324,687	7,324,687	128,129번지만 근저당권 설정
								101,731,760		101,731,760	101,731,760	
6	압류	[redacted]세청	2000.01.05	2012.07.18	2012.07.18			101,980	31,730	133,710	133,710	
								7,190	2,240	9,430	9,430	감액세
								1,080	330	1,410	1,410	
								110,250	34,300	144,550	144,550	
7	압류	[redacted]구	1987.08.11	1995.05.10	1995.05.10			98,627,284	75,913,570	174,540,854	174,540,854	
								7,743,909	5,960,498	13,704,407	13,704,407	
								1,189,097	910,632	2,093,729	2,093,729	
								107,554,290	82,784,700	190,338,990	190,338,990	
8	압류	[redacted]세청	1999.11.16	1995.06.10	1995.11.10			136,929,017	105,392,176	242,321,193	45,242,132	
								10,751,242	8,275,057	19,026,309	3,288,878	
								1,642,551	1,264,246	2,906,797	1,740,335	
								149,322,810	114,931,489	264,254,299	50,271,345	
9	근저당권			1996.02.14			1,420,000,000	1,302,140,000		1,302,140,000	-	
								102,240,000		102,240,000	-	
								15,620,000		15,620,000	-	
								1,420,000,000		1,420,000,000	-	
10	압류	[redacted]	1987.08.11	1996.03.10	1997.05.10			4,167,105	45,621,053	49,788,158	49,788,158	
								327,188	3,582,024	3,909,212	3,909,212	
								49,587	547,653	597,240	597,240	
								4,544,280	49,750,330	54,294,610	54,294,610	
11	압류	[redacted]세청	1999.11.16	1996.06.10	1997.10.10			502,849,228	387,149,798	889,999,027	-	
								39,462,164	30,397,803	69,879,967	-	
								6,031,997	4,644,109	10,676,106	-	
								548,363,390	422,191,710	970,555,100	-	
12	압류	[redacted]청	2000.01.05	2012.07.18	2012.07.18			812,608	175,019	987,627	-	
								63,804	13,742	77,546	-	
								9,748	2,099	11,847	-	
								888,160	190,860	1,077,020	-	
13	압류	[redacted]세무서	2011.01.13	2010.06.01	2010.07.01			29,890,798	13,146,424	43,037,222	-	
								2,346,933	1,032,216	3,379,149	-	
								358,559	157,700	516,259	-	
								32,596,290	14,336,340	46,932,630	-	
14	교부청구	[redacted]구청		2010.05.24	2010.06.22			2,989,071	1,314,501	4,303,572	-	
								136,922	20,967	157,889	-	
								35,858	15,768	51,624	-	
								3,161,849	1,351,236	4,513,085	-	
15	압류	[redacted]세부지사	2012.09.24					1,743,859	267,040	2,010,899	-	
								136,922	20,967	157,889	-	
								20,919	3,203	24,122	-	
								1,901,700	291,210	2,192,910	-	
								2,563,228,342	774,975,758	3,338,204,100	898,646,692	
								201,060,118	60,766,200	261,826,318	70,196,447	
								29,616,824	9,296,277	38,913,101	10,846,681	
		합계						2,793,905,284	845,038,235	3,638,943,519	979,689,820	